

경북지역 산양 보전을 위한
산양 구조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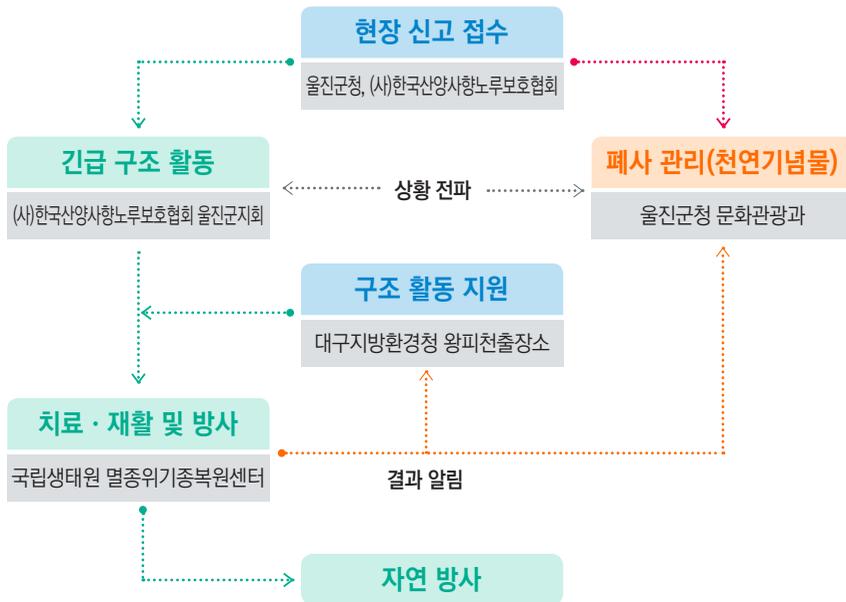
2020. 12.



I. 기본 대응 체계	
1. 구조 체계도	04
2. 구조 업무 흐름도	05
II. 구조 시 필요 장비	
1. 기록 장비	06
2. 포획 및 보정 장비	06
III. 구조 및 치료 요령	
1. 상황별 대처 요령	09
2. 응급처치 방법	11
3. 이송방법	12
4. 사후관리	13
IV. 관계기관	14
V. 관련 법령 및 서식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
2. 문화재보호법	17
3. 야생동물 구조 기록서(예시)	22
4.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서식	23
5.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서식	26
6.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서식	27
부록_ 산양 개요 및 보전 필요성	
1. 산양 개요	28
2. 산양 보전 필요성	30

I 기본 대응 체계

1. 구조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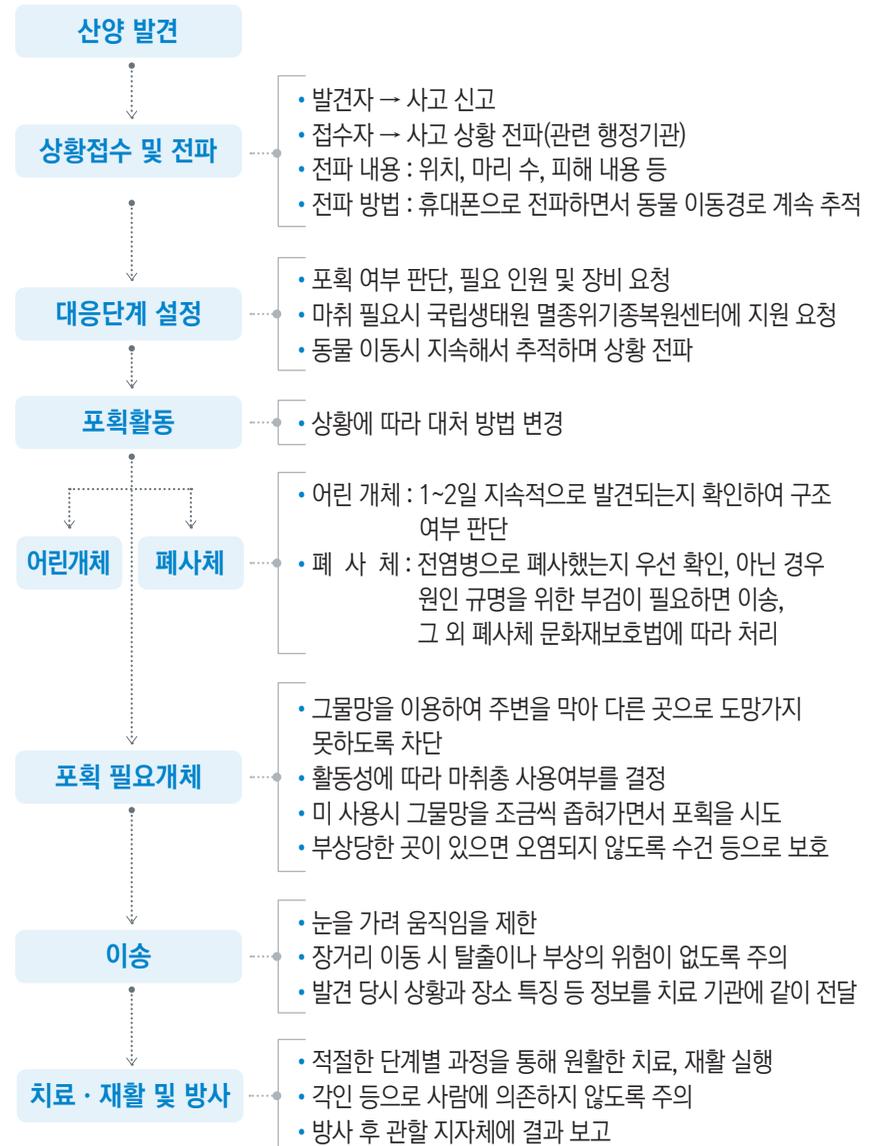
연락망

울진군청(문화관광과)	054) 789-6920~3
(사)한국산양사향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	054) 781-2999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출장소)	054) 783-9372~4
국립생태원(멸종위기종복원센터)	054) 680-7451~2

그 외 기관

경북 야생동물구조센터	054) 840-8250~1
국립공원공단 북부보전센터	033) 463-9120

2. 구조 업무 흐름도



I. 기본 대응 체계

II. 구조 시 필요 장비

III. 구조 및 치료 운영

IV. 관계기관

V. 관련 법령 및 서식

부록

II 구조 시 필요장비

1. 기록 장비

가. 구조기록서

- 신고자 정보, 발견 당시 상황(발견 위치, 사고 경위, 동물의 상태), 구조 후 조치 사항 등 정보 기록
- ※ 부록 ‘야생동물 구조 기록서 예시’ 참고

나. 사진 및 동영상 저장장치

- 구조 및 포획 현장 기록, 사진을 통한 GPS 좌표 등 메타정보 기록, 발견 장소 주변 정보 등 조난 원인 추정을 위한 기록 등

구조 번호	발견일시		구조일시		발 / 소 /
동물명	주정연명	성별	성별	성별	발소원유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이송자	성명		연락처		
	주소		주소		
발견장소	주소				
	장소특징	도로명	읍	동/리지	계곡
	특이사항				
발견 당시 동물 상태	동물 상태명	활동성	경계/외향	사용부진	소식
		외상(소/스)	발모	기립불능	호흡이상
		골절(소/스)	발발	경련	구토/설사
	특이사항				

구조기록서



사진기

2. 포획 및 보정 장비

가. 포획망

- 활용도가 가장 높은 포획도구로 손잡이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 단거리, 장거리를 조절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장시간 잡아두면 뿔이나 발굽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니 포획 후 이송상자 등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담요

- 온몸을 덮어 산양을 보정할 수 있다. 이송도구가 없을 시에 담요를 이용할 수 있다. 시야를 가려 산양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안면덮개(후드)

- 산양 머리에 맞도록 주문 제작된 안면덮개이다. 시야를 가림으로서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혹시 모를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라. 다리결박 벨트

- 산양의 양다리를 가운데로 모아 묶어주는 벨트로 포획 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포획자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다. 안면덮개와 같이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마. 마취총 및 블로우건

- 산양이 경계가 심해 직접 포획이 어려운 경우 마취총이나 블로우건을 사용해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하게 포획 할 수 있다.

바. 이송주머니, 들것

-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하고 산악지역 등 험지에서 사용이 용이하다. 천막이나 식물로 되어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있고, 장시간 이송 중 탈출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 이송상자(켄넬박스)

-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 외부 충격이나 동물에 의한 충격에 강하다. 차량을 이용한 이송이나 장시간 머물기에 용이하다. 플라스틱으로 된 이송상자는 충격에 의한 파손이 있으면 동물이 다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아. 장갑

- 산양 구조 및 포획 시 손을 보호할 수 있다. 동물과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여 상호간 질병 전파나 기생충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자. 헤드랜턴, 서치라이트 등 조명 장비

- 야간 구조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조명 장비가 필요하다. 양손이 자유로운 헤드랜턴과 밝기 조절이 되는 서치라이트를 준비한다.

차. 구급약품상자

- 소독제, 거즈, 반창고, 항생제, 창상 세척에 필요한 멸균생리 식염수를 준비한다. 체온 조절을 위해 핫팩이나 알코올 스프레이를 준비한다. 또한 골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목용품도 필요하다.



포획망



후드, 장갑, 담요



마취총 및 블로우건



이송주머니, 들것



이송상자



구급약품상자

III 구조 및 치료 요령

1. 상황별 대처 요령

가. 공통사항

- 최초발견자가 민간인이라면 가급적 현장을 지키도록 요청한다.
- 동물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고한다.
- 포획 과정에서 사람, 동물 모두 부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동물을 포획하여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초발견자에게 발견당시 상황, 주변 환경 등 정보를 자세히 듣고 기록하여 추후 구조과정이나 사고원인 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발견당시 상황으로는 추락, 차량충돌, 펜스에 끼임, 기아, 탈진, 미아 등이 있다.
- 발견 장소 유형으로는 도로변, 야산, 계곡, 건물주변 등이 있다.
- 발견 장소가 도로변인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단독으로 포획을 시도하지 말고 경찰, 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차량 통제 후 구조를 실시한다.
-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나 기립여부를 통해 활동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 포획과정에서 흥분하여 체온이 높아지는 경우 알코올 스프레이를 털 아래에 뿌려 체온을 낮춰 줄 수 있다.

나. 폭설로 인한 조난

- 폭설로 고립된 경우 단순 고립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장에서 기아, 탈진 여부만 판단하여 현장 방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눈의 양, 먹이 존재 여부, 동물의 활동성, 발견 장소의 고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 여부를 판단한다.

- 구조가 필요한 경우 활동성 정도에 따라 포획 계획을 수립한다.
- 구조 현장에 아직 눈이 많이 남아 있어 재 고립 될 우려가 있다면 구조하여 임시보호 후 방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어린 개체를 발견한 경우

- 6~7월에 발견되는 어린 산양은 어미가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데려오거나 장소를 옮기지 않는다.
- 2~3일간 지속적으로 관찰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구조한다.
- 뿔의 골화가 진행 중이므로 뿔을 잡고 포획할 경우 주의한다.

라. 활동성이 좋은 개체

- 부상당하거나 탈진이 있는지 육안으로 관찰한다.
- 부상이나 탈진이 있는 경우 포획 계획을 수립한다.
- 산양의 이동 경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후속인원이 도착한 후 포획이 용이하도록 한다.
- 후속인원은 산양을 포위할 수 있는 그물망, 마취총, 이송도구 등 필요 물품을 준비한다.
- 산양이 흥분하지 않도록 자극하지 않고 도주로만 차단한 후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한다.

마. 활동성이 적은 개체

- 기아, 질병 감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획 계획을 세워 포획을 실시한다.
- 산양이 이동하는지 관찰하며 후속인원이 도착한 후 포획이 용이하도록 한다.

- 후속인원은 산양을 포위할 수 있는 그물망, 마취총, 이송도구 등 필요 물품을 준비한다.
- 그물망을 이용해 포위하여 포위망을 조금씩 좁혀가며 다가가 포획망이나 모포를 이용하여 몸 전체를 덮어 포획한다.
- 시야를 차단한 상태로 뿔을 손으로 잡고 눌러서 일어서지 못하게 한 후 몸통을 눌러준다.
- 산양이 진정이 되면 안면덮개로 눈을 가려 동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고 안정감을 가지도록 한다.

바. 부상당한 개체

- 활동성이 적은 개체와 동일하게 포획한다.
- 추가적인 부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부상당한 곳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건 등으로 감싸 놓는다.
- 조직이나 뼈 조각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부상부위를 임의로 세척하지 않는다.
- 최대한 빨리 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사. 폐사체

- 구강 및 발굽에 수포가 있거나 거품이 섞인 침을 많이 흘리는 경우 구제역이 의심되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
- 구제역 등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 국립야생동물질병 관리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린다.
- 그 외 폐사체는 폐사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이나 동물의 상태 등을 사진, 영상자료로 남긴다.
- 부검이 필요한 개체는 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외 개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치한다.

2. 응급처치 방법

가. 공통사항

-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빨리 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치료기관에 인계된 경우 공통적으로 신체검사,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등 기본 검사를 통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처치 및 폐사원인 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신체검사를 하여 호흡수, 체온, 맥박수가 정상범위 인지 확인 및 외상이나 신경손상 등을 판단한다.
- 혈액검사를 하여 빈혈, 출혈, 영양결핍, 기아, 탈수, 감염 등의 여부를 판단한다.
- 방사선촬영을 통해 골절, 내부 장기 이상이 있는지 판단한다.

구분	정상범위	
	성체	어린 개체
심박 수	분당 70~90회	분당 15~90회
호흡 수	분당 15~30회	분당 20~40회
체온	38~40도	39.5~40.5도

출처: 국립공원연구원(2020) 산양 구조·치료 매뉴얼

나.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 골절, 총상, 울무 등 외상이 있는 경우
 - 골절로 인한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골절부위에 추가적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수건 등으로 감싸 놓는다. 골절된 뼈 조각이 사라질 수 있으니 임의 세척은 하지 않는다.
 - 총상으로 인한 외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호흡 마취 후 방사선 상 확인된 납탄을 제거 한다.

- 울무에 걸린 경우 울무가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만 울무를 제거한다. 울무로 인한 상처가 깊은 경우 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울무제거와 세척 작업을 실시하여 필요시 봉합 후 상처 소독 및 치료를 진행한다.
- 미아나 탈진된 경우
 - 담요나 수건 등을 케이지 바닥에 깔고, 온열기로 따뜻한 온도를 조성해준다.
 - 외부 소음이나 자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수건 등으로 케이지를 가려 준다.
 - 물, 먹이 공급과 체중 증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유동식을 체중에 맞게 계산 후 공급해준다.

3. 이송방법

- 이송주머니, 들것, 이송상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이송 시 산양의 눈을 안면덮개로 가려 시야를 차단해 안정감을 주고, 움직임을 제한하여 추가적인 부상을 방지한다.
- 이송상자는 동물의 2배 정도가 적당하며, 상자가 너무 작으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상자가 너무 크면 상자 내에서 운동성이 커 이송상자 파손이나 추가적인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바닥에는 담요나 수건을 깔아주어 외부 충격이나 진동을 막고, 보온이 되도록 한다.
- 산양이 누워서 이송되는 경우 우측이 아래로 향하게 눕히고 허를 밖으로 빼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 이송상자에는 반드시 공기가 통하도록 한다.
- 차량이송 시 외부 충격이나 소음으로부터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치료기관 인계 시 발견당시 상황과 장소를 자세히 설명하여 조난원인을 파악하고 치료가 용이하도록 한다.



들것을 이용한 이송



이송상자를 이용한 이송



안면덮개, 다리결박 벨트 사용 모습



마취총 사용 모습

4. 사후관리

가. 사육 및 재활훈련

- 사육과정에서 각인되거나 먹이활동에 사람 의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활동 금지 단계, 활동 제한 단계, 활동 허용 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각 단계에 맞는 은신처를 제공하여 사람에게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안정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금지 단계: 골절 등 움직임 제한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중독, 신경장애, 저체온증, 기아, 탈진 상태인 경우 움직임을 제한 하되 최소한 기지개를 켤 정도의 크기의 계류공간을 제공한다.
- 활동 제한 단계: 기력을 회복하거나 골절 등의 치료가 적절히 진행 되어 조금씩 움직여 자연스럽게 재활운동이 되도록 하는 단계로 뛰지는 못하지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계류공간을 제공한다.
- 활동 허용 단계: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 상황으로 바위가 있거나 산림지대와 유사한 사육환경을 조성하여 방사 전 재활훈련과 자연 적응 훈련이 되도록 계류공간을 제공한다.

나. 방사

-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방사를 실시한다.
- 방사 전 체중의 변화, 먹이반응, 사람에게 대한 경계반응 등을 고려하여 자연 생존 가능성을 판단하여 방사여부를 결정한다.
- 가능하면 구조된 장소에 방사한다. 방사가 불가능한 경우 비슷한 환경을 선택하며, 위협이 되는 구조물이나 천적이 없는 곳에 방사한다.

다. 안락사 및 부검

- 야생에서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부상이나 질병 감염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각한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아래 수의사가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구조·치료 중 폐사하거나 폐사체를 대상으로 폐사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시 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IV 관계기관

연번	기관명	산양 관련 업무	주소	연락처
1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산양 구조·치료· 재활·방사 활동 지원	경북 영양군 영양읍 고월길 23	054- 680-7451~2
2	대구지방환경청 왕피천출장소	보호 활동, 겨울철 먹이주기, 현장 구조지원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불영계곡로 1720	054- 783-9372~4
3	울진군청	겨울철 먹이주기, 협회 구조 활동 지원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054- 789-6920~3 (문화재팀) 054- 789-6710~3 (환경기획팀)
4	(사)한국산양사향 노루보호협회 울진군지회	산양 모니터링 및 현장 구조 활동 주관	경북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789	054- 781-2999
5	경북야생동물 구조센터	경상북도 내 조난 야생동물 구조, 치료	경북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150-44	054- 840-8250

6	국립공원공단 북부보전센터	국립공원 내 산양 구조, 치료, 복원	강원 인제군 북면 황태길 76-46	033- 463-9120
7	국립야생동물 질병관리원	야생동물 질병 예찰, 역학조사, 방역	광주 광산구 송암길 1	032- 560-7141
8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지정 야생생물 및 서식지 안전 제보	대전 서구 청사로 189	1600-0064

V 관련 법령 및 서식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등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등의금지) 〈중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중략〉</p> <p>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중략〉</p>	<p>제23조의3(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야생동물 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p> <p>1.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의사(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나.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수의학, 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사람 다. 야생동물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인 사람 라. 기관, 단체 또는 대학 등에서 수의학, 생물학</p>	<p>제44조의2(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7.></p> <p>1.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필요한 건물, 시설의 명세서 2.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3.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p>	<p>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중략〉</p> <p>제23조의4(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법 제3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 5. 26., 2020. 9. 29.> [본조신설 2015. 3. 24.]</p>	<p>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치료 업무 계획서</p> <p>〈중략〉</p> <p>제44조의4(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는 유선·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0.></p> <p>1.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발견장소 또는 보호장소 2. 신고대상 야생동물의 종류 및 마리 수 3.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를 말한다) 4. 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고자(관리자가 있</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p> <p>6. 야생동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을 추측할 수 있는 주변 정황 [본조신설 2015. 3. 25.]</p>

2. 문화재보호법

가. 동물치료소 지정 및 치료결과 보고 등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① 천연기념물 동물이 조난당하면 구조를 위한 운반, 약물 투여, 수술, 사육 및 야생 적응훈련 등(이하 “치료”라 한다)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동물치료소에서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 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p>		<p>제 17 조 (동 물 치 료 소 의 지 정 · 취 소 보 고)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또는 취소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p> <p>제18조(동물치료소의 치료결과 보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p> <p>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p> <p>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 단체</p> <p>③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천연기념물 동물의 조난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치료소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먼저 치료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개정 2014. 1. 28.〉</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함한다)에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난동물이 폐사하였을 때에는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개정 2019. 12. 24.〉</p> <p>제19조(동물 치료 경비 지급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지급에 관한 업무를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에 위탁한다.</p> <p>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를 받으려는 동물치료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포함한다)를 수의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p> <p>③ 수의사회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 경비 청구를 접수하면 치료 경비 내역을 확인하여 금액을 확정 후 지급하고, 지급 결과를 분기별로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나. 현상변경 허가 및 신고사항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5조(허가사항) ①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p> <p>〈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p>	<p>제21조(허가절차) ①법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0. 6.〉</p> <p>〈중략〉</p>	<p>제14조(허가신청서)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개정 2018. 5.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p>〈중략〉</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28., 2019. 11.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 	<p>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18. 5. 28., 2019. 7.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채취·사육·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p>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8.〉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8.〉

법	시행령	시행규칙
<p>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p> <p>〈중략〉</p> <p>제36조(허가기준) ①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11. 26.></p> <p>1.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p>	<p>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p> <p>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p> <p>바. 표본(標本)·박제(剝製)하는 행위</p> <p>사. 매장·소각(燒劫)하는 행위</p> <p>〈중략〉</p> <p>제22조(허가서) 문화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재,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은 관할 시·도지사(특</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p> <p>2.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p> <p>3. 문화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p> <p>②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 2014. 1. 28.〉</p> <p>제37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8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p>	<p>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 12. 23.〉</p> <p>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p>	<p>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2014. 1. 28., 2016. 2. 3., 2018. 6. 12.)</p> <p>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p> <p>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p> <p>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p> <p>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p> <p style="text-align: center;">(중략)</p> <p>제40조(신고 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p>	<p>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정 2014. 12. 23.)</p> <p>②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p>	<p>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p> <p>②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p> <p>③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p> <p>④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멸실·유실·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p> <p>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p> <p>2.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p> <p>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p>	<p>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23.)</p> <p>제24조(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에서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매장·소각</p> <p>2. 천연기념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p> <p>[본조신설 2018. 5. 28.]</p>	<p>⑤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p> <p>⑥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p> <p>⑦ 법 제40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표본·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p> <p>⑧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5. 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경우</p> <p>4.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p> <p>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p> <p>6. 국가지정문화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p> <p>7.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p> <p>8. 제35조제1항제4호 또는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p> <p>9. 동식물의 종(種)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p>		<p>⑨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3 및 영 제2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신고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8. 5. 29.></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있는 경우</p> <p>9의2.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p> <p>9의3.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 기타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p>		

3. 야생동물 구조 기록서(예시)

구조 번호					발견 일시					구조 일시				
동물명					추정연령					성별	암 / 수 / 알수없음			
신고인	성명					연락처								
	소속					주소								
이송자	성명					연락처								
	소속					주소								
발견장소	주소													
	장소특징	도로변	숲	농경지	계곡	절벽	기타()							
	특이사항													
발견 당시 동물 상태	동물 상태점검	활력성	경계/위협	식욕부진	수척									
		외상(유/무)	탈모	기립불능	호흡이상									
	골절(유/무)	발작	경련	구토/설사										
특이사항														
인수 / 인계 내역														
기타 특이사항														

4.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24.>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				
대상 문화재	명칭					
	종류	지정(등록)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 포획·채취·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방사·위치추적기부·착·혈액 등 채취·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건축물·도로·관로·전선·공사·지하구조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하는 행위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국·등록 문화재의 현상변경 유형 (* 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함)	[] 건축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교량·등대 등 구조물 외관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터널·동굴 등 외관이 드러나지 않는 시설물 내부 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건축물 외의 시설물로서 그 밖의 경우에는 국·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부표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색채·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동선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I. 기본 대응 체계

II. 구조 시 필요 장비

III. 구조 및 치료 운영

IV. 관계기관

V. 관련 법령 및 서식

부록

4.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서식

(3쪽 중 제2쪽)

신청사항	위 치			
	내 용			
	사 유			
참고 사항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착 수	소 요 경 비	원	재 원
	완 료	그 밖 의 사 항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5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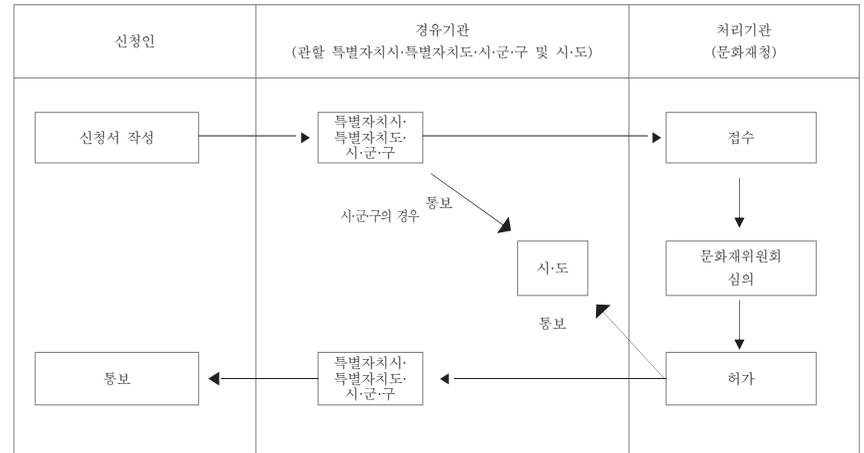
첨부서류	1. 현상변경 계획서	수 수 료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없 음
	3. 현장 사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쪽 중 제3쪽)

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5.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2.29.>

천연기념물 조난동물 치료결과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일
치 료 소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대상문화재	명 칭	지정번호	
접 수	조 난 일	조난장소	
	조난원인	신 고 자	
	조난 상황		
완 치	완 치 일	방사장소	
	완 치 상황		
폐 사	폐 사 일	폐사장소	
	폐사원인		
치료경비	청 구 금 액 (원)	치료내역	
조 치 의 건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문화재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난동물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난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질 차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대표자

접 수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통 보
처 리 기 관
(시·도지사)

보 고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80g/㎡)]

6.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서식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신설 2018. 5. 29.>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 부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 문화재	명칭	지정번호	제 호 수량
소재지 (보관장소)	(전화번호:)		
폐사일	전자행정 멸 실신고번호 완료일		
부검내용	착수일	완료일	
	장소		
	사유		
	결과		
그 밖의 사항	* 조치계획 등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의 부검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관련 사진	수 수 료 없 음
------	-------	--------------

처 리 질 차



신고인

검 유
처 리 기 관
(시·도 및 시·군·구)

접 수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정 리
처 리 기 관
(문화재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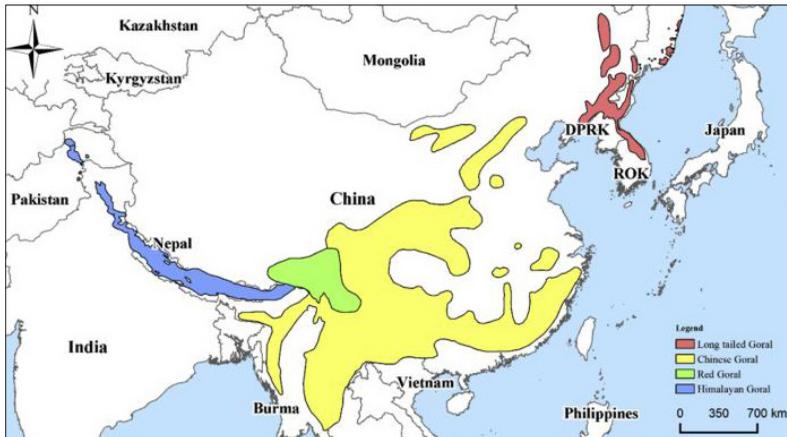
부록 산양 개요 및 보전 필요성

1. 산양 개요

가. 분류학적 지위 및 분포

- 산양(Long-tailed Goral, *Naemorhedus caudatus*, Milne-Edwards, 1867)은 우제목(Artiodactyla) 소과(Bovidae)에 속하는 종으로서 계통진화학적으로 소과의 조상형질을 가진 원시적인 현존동물
- 산양속(genus *Naemorhedus*)에 속하는 산양은 현재 4종으로 알려져 있음
- 과거 산양속에는 시로(serow)종도 포함시켰지만 현재는 형태적, 유전적 특성 차이로 다른 속(*Capricornis*)으로 분류함

표 1. 전 세계 산양속(genus *Naemorhedus*) 분포(Kim et al. 2019)



국명(학명)	분포
산양(<i>Naemorhedus caudatus</i>)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중국산양(<i>Naemorhedus griseus</i>)	버마,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붉은산양(<i>Naemorhedus baileyi</i>)	중국, 티벳, 인도, 미얀마
히말라야 산양(<i>Naemorhedus goral</i>)	인도, 네팔, 부탄

나. 분포, 생태 및 서식지

• 분포

- 산양은 아시아 동부와 북부 산맥 위치한 러시아 동부(시호테 알린, 프리모스키, 하바롭스키 등), 중국 북동부(소싱안링산맥, 지린 및 흑룡강 일원), 북한, 한국(비무장지대, 설악산, 울진, 삼척 등의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일원)에 분포(IUCN, 2020)
- 과거 산양은 19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으나 강원도 폭설기간(1964, 1965년)에 약 6,000개체가 포획되어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하게 감소(원, 1967)
- *이후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산림 개간, 벌채 등 산림 이용 증가와 서식지 감소, 산림을 관통하는 도로와 임도, 등산로 개설 등으로 인해 서식지 파편화 현상 점차 증가
- 최근 경기 및 서울 북부지역, 중부지역(속리산, 주왕산) 서식 확인

• 생태 및 서식지

- (형태) 암·수 모두 벌어진 발굽과 2개의 원통형 뿔을 보유하고 있으며 털은 회색 음영의 갈색 털이 있고 목에 흰 반점과 흰색 긴 꼬리, 몸길이 82~130cm, 꼬리 길이 8~20cm, 체중 35~40kg
- (서식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로 600~1,000m에서 주로 서식, 경사도는 30~35°, 남향 선호, 여름철은 높은 고도, 겨울철은 낮은 고도 선호, 수계와의 거리 100m 이내 선호
- (생태) 연간 행동권은 수컷 1.0~1.5km², 암컷 0.8~1.0km²,
- (먹이) 목본류 씨앗, 과일, 어린잎, 도토리 등 초식성 먹이 섭식
- (번식) 짝짓기는 초겨울, 수컷 발정기는 9~11월, 암컷 발정기간은 약 20~30시간, 교미는 1회당 1~3차례, 보통 1개체의 새끼를 출산



그림 1. 산양(*Naemorhedus caudatus*)

2. 산양 보전 필요성

가. 국내·외 멸종위기 지정 현황

- 세계적으로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IUCN Red List) 취약종(VU, Vulnerable)으로 지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에 속함
- 국내에서는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98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217호('68년) 지정



그림 2. 산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지정 현황

나. 국내·외 개체군 동태

- 산양은 동북아시아에만 분포하며, 전체 개체군 크기는 성체 기준 약 2,500~10,000개체로 추정하며 지속적인 감소 추세(IUCN, 2020)
- 국외
 - (러시아) 남서부지역에 약 700~1,100개체 서식 추정(Myslenkov & Voloshina, 1989)
 - (중국) 개체군 현황은 없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Smith & Xie, 2008)
 - (북한) 5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나 근거 부족(원, 1997)

• 국내

-DMZ 일원, 백두대간(설악산, 월악산, 오대산), 울진·삼척 권역은 비교적 안정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으나, 그 외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주왕산 등은 20여 개체 또는 이하 서식 추정('19년 기준)



그림 3. 전 세계 산양(*Naemorhedus caudatus*) 분포(IUCN redlist)

다. 위협요인

•보신문화에 기인한 밀렵, 개발에 따른 서식지 훼손 및 단절, 기후 변화로 인한 폭설, 저온 등이 산양 개체군 존속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표 2. 전국 산양 연도별 폐사 신고 현황 (자료제공 : 문화재청)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산양	20	20	25	20	85

- 직접적 위협요인

- 밀렵 : 약용 및 박제 등을 위한 사냥으로 산양 개체수 감소
- 개발압력 : 도로 건설, 채석장 건설, 대체 에너지 개발(풍력발전, 태양광), 송전탑 건설, 삭도(케이블카)건설 등으로 인한 서식지 파편화 및 감소
- 로드킬 : 차량 충돌로 인한 야생 개체수 감소
- 질병확산 : 호흡기성, 소화기성, 전염성 질병(안 등, 2018)
- 기후변화 : 저온, 폭설,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에 따른 먹이 부족 폐사

- 간접적 위협요인

- 보전 인식 부족 : 야생동물 보신문화, 개발 제한 불만, 개발우선 정책
- 유해조수 저감 :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유해조수 구제 과정에서 발생
- 생태정보 부족 : 개체군 유전 및 질병 관리 미흡
- 서식지 관리 미비 : 개발사업에 의한 서식지 훼손 및 보호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효율적 정책 대응 미흡



그림 4. 산양 위협요인(왼쪽: 밀렵, 오른쪽: 겨울철 폐사)

[참고자료]

-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2019)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야생동물 구조 가이드》 pp. 17-22.
- 김영준, 이항, 양효진, 김수호 (2008) 《2008 천연기념물(야생동물) 구조 현장지침》 문화재청. pp. 6
- 환경부, 국립생태원, (2020) 《멸종위기 야생생물 산양 보전 계획》 pp. 1-5.
- 국립공원연구원, (2020) 《산양 구조·치료 매뉴얼》 pp. 4-10.

경북지역 산양 보전을 위한

산양 구조 매뉴얼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주 소 (36531) 경북 영양군 영양읍 고월길 23 / www.nie.re.kr

연락처 054-680-7100 / FAX 054-680-7199

지은이 안병덕, 김희종, 박용수, 최 진, 김영건, 문정찬, 김아름,
김영민, 김영채, 박다솜, 박희복, 이제민, 임수진
